
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BI 입주기업 모집공고
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여성 (예비)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.

2026년 9월 14일

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장

□ 모집개요

- 소 재 지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
- 모집규모 : 1개사

□ 입주자격

-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여성창업자
-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여성기업
 - ※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하여야 하며 (예비창업자의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), 미이행 시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
 - ※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주 신청한 경우, 입주 후 4주 이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이행 시 입주 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
- 신청자격제한
 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4조에 근거,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(참고 1)
 - 국세,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
 - 폐수, 소음, 진동,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
 - 센터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

□ 입주기업 지원

- 인터넷, 회의실, 화상회의 시설 이용 지원
- 중소기업 지원시책,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
- 여성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

□ 입주공간 및 입주기업 부담금

- 입주공간 : 개별실 18m²~35m²(전용면적) 내외



- 입주기간 : 계약일 ~ 2027. 6. 30.까지
 - ※ 입주 후 경영성과 평가(연장심사)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,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음
- 입주부담금
 - 입주보증금 : 1,000,000원
 - 월관리비(VAT 별도) : 12,000원/3.3m²
 - ※ 입주부담금은 센터 내부 규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
□ 선정기준

- 문제인식, 실현가능성, 성장전략, 재무계획, 팀구성 등
-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, 창업프로그램 이수자, 여성고용우수기업 등 우대

□ 선정 절차

- 1차 : 서류심사
- 2차 : 발표심사(대표자 직접 발표 및 질의응답, 총15분 내외)
 - ※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발표심사를 실시함
 - ※ 1차·2차 심사 결과는 각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
 - ※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 - ※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6. 9. 14.(월) ~ 2026. 9. 30.(수)까지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hjlim@wbiz.or.kr)
- 제출서류

구분	서류명
공통	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BI 신규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소정양식) 1부
	개인[신용]정보 수집/이용/제공 동의서(소정양식) 1부
예비창업자	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1부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
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개인) 각 1부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
기창업자	여성기업확인서 1부
	창업기업확인서 1부
	사업자등록증 1부
	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 1부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
	총사업자등록내역 증명원 1부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
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개인/법인) 각 1부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
	전년도 재무제표(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확인 자료) 각 1부
	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창업~당해 연도) 1부
	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해당시	지식재산권, 수상, 투자실적 등 기타 심사에 참조될 수 있는 서류 각 1부

※ 관련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문의처

-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 Tel : 062-527-1612

【참고 1】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업종분류	산업표준 분 류	업 종	비고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관련 전업종	
부동산업	68~69	부동산 임대, 중개, 장비 및 기계 임대, 음반 및 비디오 등 임대업 등	
숙박 및 음식점업	55~56	숙박업, 음식점업, 주점업	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상시근로자 20명이 상 법인 음식점업 제외
무도장운영업	91291	무도장, 콜라텍, 댄스홀	
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	골프장 운영업, 스키장 운영업	
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9124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
기타 개인서비스업	96	이용 및 미용업, 욕탕, 마사지 및 미용관련 서비스업 세탁 및 장례, 예식관련 서비스업 및 미분류 개인 서비스업 등	산업용 세탁업 제외

< 산업표준 분류 >

- 55 숙박업(호텔업, 여관업, 휴양콘도 운영업,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,
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)
- 56 음식점 및 주점업(일반 음식점업, 기관구내식당업, 출장 및 이동 음식점,
기타 음식점업, 주점업, 비알콜 음료점업)
- 64 금융업(은행 및 저축기관, 투자기관, 기타 금융업)
- 65 보험 및 연금업(보험업, 재 보험업, 연금 및 공제업)
-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(금융지원 서비스업,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)
- 68 부동산업(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)
- 69 임대업; 부동산 제외(운송장비 임대업,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, 산업용
기계 및 장비 임대업, 무형재산권 임대업)
-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(미용,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,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)